# 기안용지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501442 | (전화번호 ) |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|
| 처리기간 | | 시 장 | |
| 시행일자 | | | 결재 1.3.10 |
| 보존년한 | | |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조기관 | 제2부시장 | | 협조 | 법무담당관 (고시안 심사) | 심사필 |
| | 도시계획국장 | | | | |
| | 도시계획2과장 | 가로계획1계장 | | | |
| 기안책임자 | 정한영 | 80.10 | | |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경유 수신 참조 | 각 안 참조 | 고시제 80호 | 신 | 통제 |

제목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변경결정및 지적승인.

제1안. 내부결재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지하철 2호선 서소문 정차장을 지하철 종로선과의 승환편의를 위해 시청앞 정차장과 연결에 따른 위치일부 변경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자 합니다.

2. 본건은 당시 제10차(80.9.26)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법무심사 | 80.11.3 | 제212호 |
| 담당자 | | 법무담당관 |

제2안. 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변경결정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을 도시

정서

관인

발송

0201-1-8A(갑)
1969. 11. 10승 인

190mm×200mm(2급인쇄용지 [illegible]/㎡)
조 달 청 1,000,000만매인쇄

제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663호(78.12.10)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및 지적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 10

서울 특별시장.

•고속철도(부대시설) 변경 설정 및 지적 승인 조서

|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폭(M) | 연장(M) | 면적(M²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정 | 서소문정차장 | 중앙일보사 앞 | 20 | 205 | 5,140 | |
| 변경 | " | 서소문동 76번지 앞 | 17 | 205 | 3,500 | |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제3안

수신: 건설부 장관 발신: 서장

제목: 등 신

1. 당서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을 별첨과 같이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및 도면 1부.

변경 사유서 1부.

제4안

수신: 총무처 장관(문화공보관) 발신: 서(국)장

제목: 관(서)보 게재 의뢰.

1. 다음과 같이 관(서)보 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제재 구분 : 고시

나. 제재 내용 : 별첨고시문 사본.

다. 제재 건명 : 도시 계획시설(고속철도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라. 근거 법규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(1) 매.

제 5 안

수신 : 중구청장. 발신 : 시장

제목 : 동 건

1. 귀구 관내 도시 계획 시설(고속 철도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. 홍보하니 도면 점리 및 관계과에 홍보 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것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제 6 안

수신 : 지하철 본부장. 발신 : 시장

제목 : 동 건

1. 당시 도시 계획 시설(고속 철도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홍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林野、地番区劃入 新編서울特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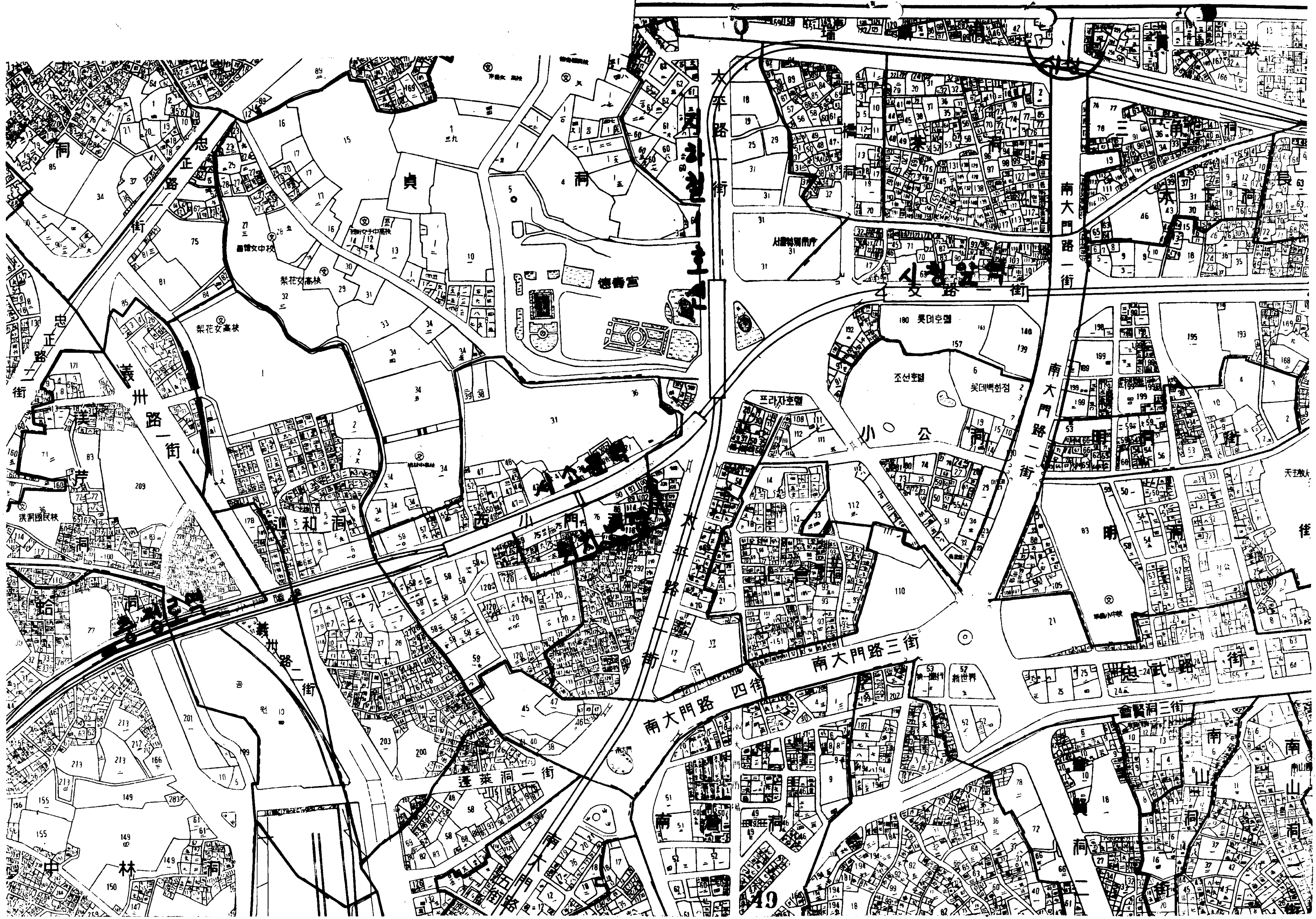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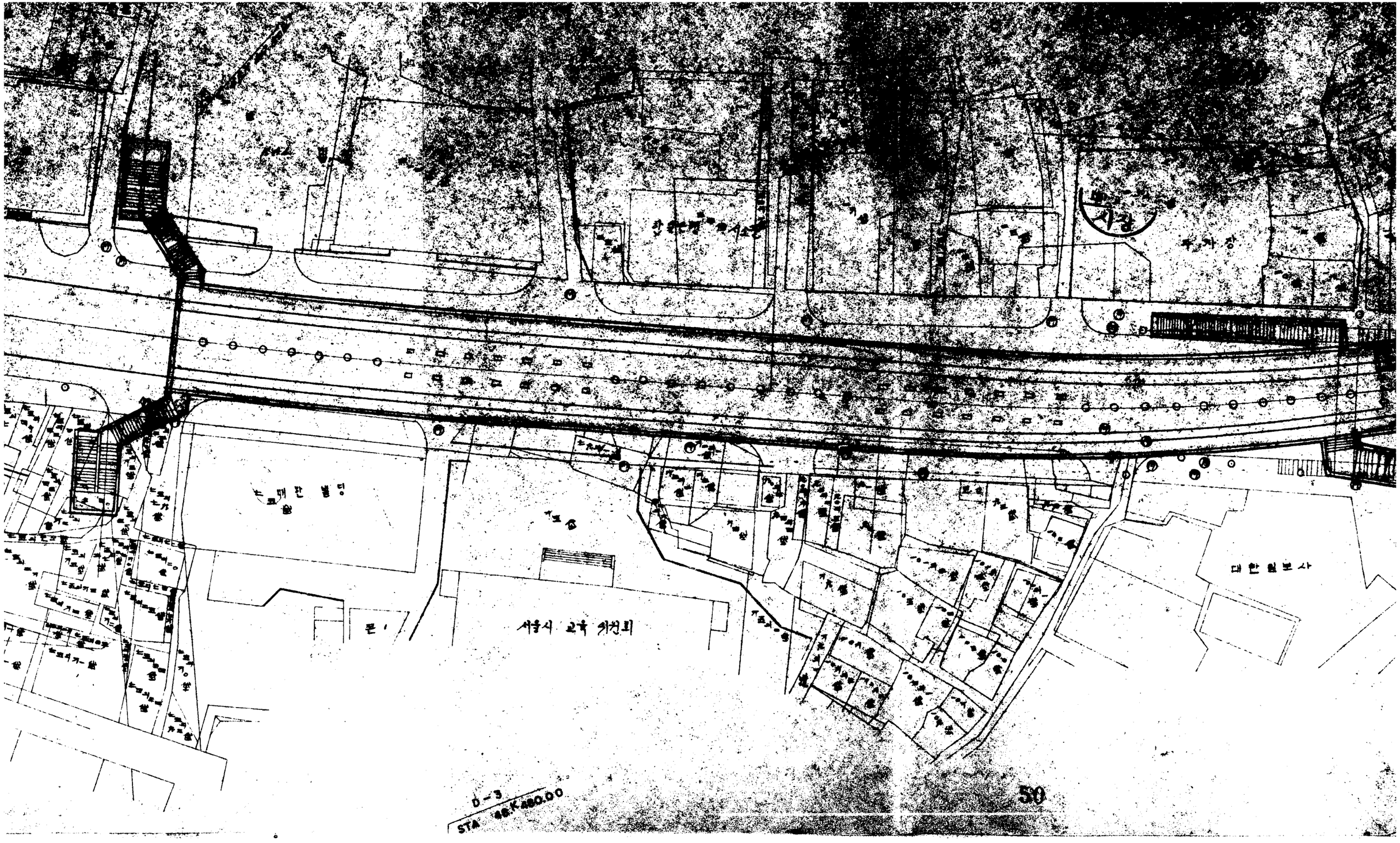

시장
주차장
서울시 교육 위원회
대한일보사
D-3
STA 48.K480.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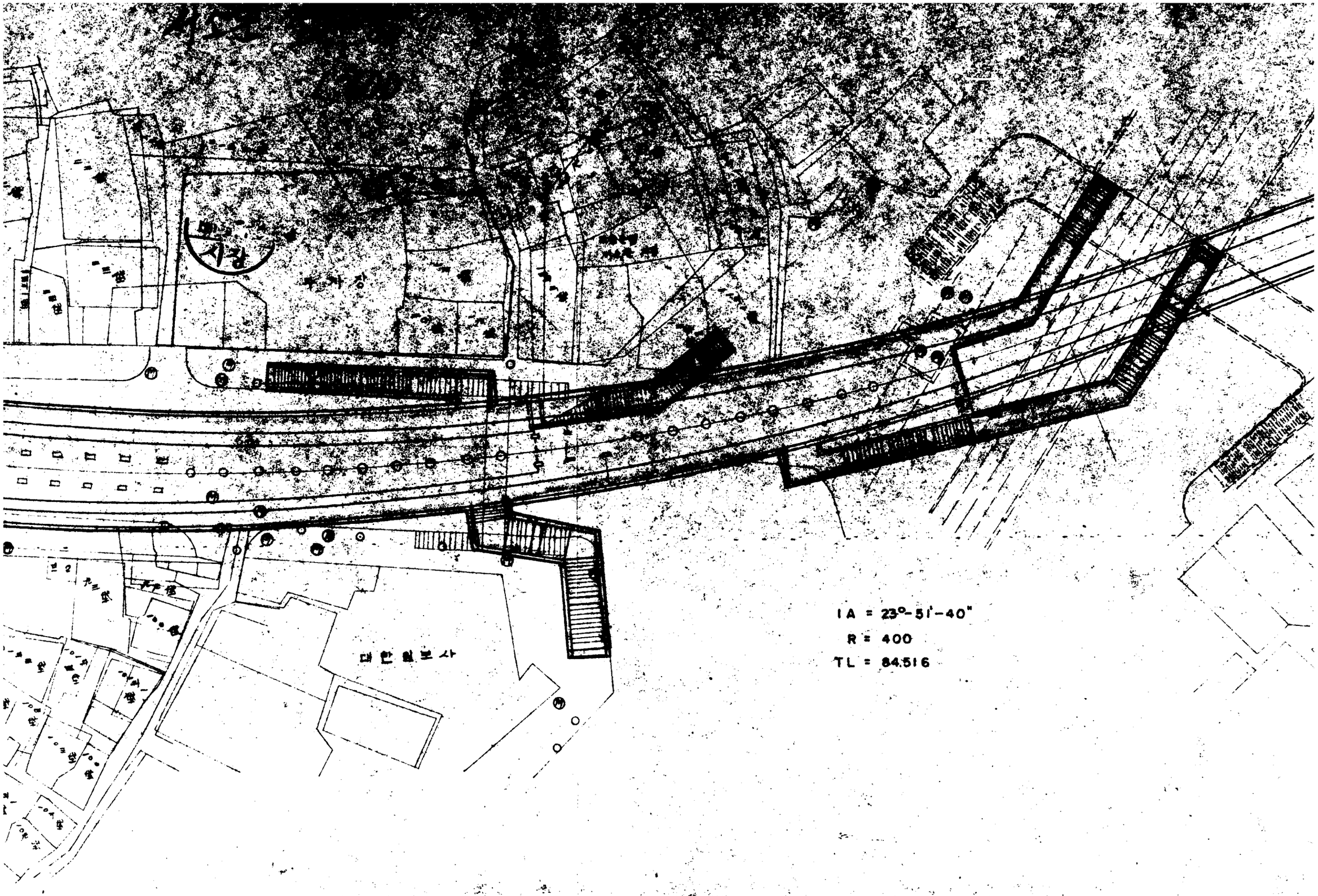
IA = 23°-51'-40"
R = 400
TL = 84.516